

27. 온두라스(Honduras)

◎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7	2019	비 고
보험료율(가입자/사용자)	(사회보험) 2.5% / 3.5% (개인계좌) 1.5% / 1.5%	(사회보험) 2.5% / 3.5% (개인계좌) 1.5% / 1.5%	-
보험료 부과 상한/하한 소득	(사회보험) 8,882,30 / X (개인계좌) 8,882.31 / X	(사회보험) 9326.42 / 6,440.66 (개인계좌) 9.326.43 / X	사회보험제도 하한소득 도입
연금수급 개시 연령	(사회보험) 65(남), 60(여) (개인계좌) 가입자 희망시기	(사회보험) 65(남), 60(여) (개인계좌) 가입자 희망시기	-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사회보험) 15년 (개인계좌) 5년	(사회보험) 15년 (개인계좌) 5년	-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및 현행법** : 1957년(사회보험), 1959년(사회보장, 1971년 시행), 2015년(사회보호제도)

2 제도형태

- 사회보험, 의무개인계좌

3 적용대상

○ 사회보험

- 당연적용 :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 공무원, 농부, 임업근로자, 대부분의 농업근로자, 견습생
- 임의가입 : 자영자, 가사근로자,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사용자와 특정 농업부문 근로자, 조합 구성원, 공인된 근로자, 농민 조합 그리고 임시 근로자
- 특별제도 : 군인, 집행부 근로자, 교사 및 교수, 온두라스 국립 자치 대학 근로자

○ 의무개인계좌

- 당연적용 : 월 9,362.42 lempiras 이상 소득의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 공무원, 임업근로자, 대부분의 농업근로자, 견습생
- 임의가입 : 월 9,362.42 lempiras 미만 소득자

○ 가입자

- 사회보험
 - 보험료율 : 월 소득의 2.5%
 - 보험료 부과 월 하한소득 : 최저임금(6,440.66 ~ 11,549 lempiras로 경제분야에 따라 상이)
 - 보험료 부과 월 상한소득 : 9,326.42 lempiras
- 의무개인계좌
 - 보험료율 : 월 소득의 1.5%
 - 보험료 부과 월 하한소득 : 9,326.42 lempiras

○ 자영자

- 사회보험
 - 보험료율 : 월 소득의 4%
 - 보험료 부과 월 상한소득 : 9,326.42 lempiras
- 의무개인계좌
 - 보험료율 : 조세로 충당됨
 - 보험료 부과대상 월 하한소득 : 9,326.43 lempiras

○ 사용자

- 사회보험
 - 보험료율 : 월 소득의 3.5%
 - 보험료 부과대상 월 상한소득 : 9,326.42 lempiras
- 의무개인계좌
 - 보험료율 : 월 소득의 1.5%
 - 보험료 부과대상 월 하한소득 : 9,326.43 lempiras

○ 정부

- 사회보험 : 총 가입자와 사용자 보험료의 최소 0.5%를 사용자로서 납부
- 의무개인계좌 : 없음

○ 노령급여

- 노령연금(사회보험)
 -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65세 남성 또는 60세 여성
 - 퇴직 필수

- 연기연금 : 연금의 연기 가능하며 연령 제한 없음
- 상시간병수당 : 가입자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상시간병을 요하는 경우
- 노령일시금(사회보험) : 납부기간이 180개월 미만인 65세 남성 또는 60세 여성
- 노령연금(의무개인계좌)
 - 최소 5년 이상 보험료 납부, 원하는 시기에 수급
 - 조기인출 : 5년 미만 납부, 원하는 시기에 수급

○ 장애급여

- 장애연금(사회보험)
 - 최종 6년 중 3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산재사고가 아닌 경우 최종 24개월 중 8개월 이상 납부), 일상적인 직업을 위한 근로 능력을 65% 이상 상실한 것으로 판정된 자
 - 상시간병수당 : 장애 정도가 51%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상시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장애일시금(사회보험) : 장애판정은 받았으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족급여

- 유족연금(사회보험)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자가 최종 6년 중 36개월 이상(산재로 인한 사망이 아닌 경우, 최종 24개월 중 8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 요건 필요
 - 수급가능 유족 : 6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 14세 미만 자녀(학생인 경우 18세,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 배우자, 동거인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모친(연령 무관)과 부친(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 배우자연금은 재혼 시 소멸
 - 재혼일시금 : 배우자 또는 동거인 재혼 시 지급
- 장제비(사회보험) : 사망자가 사망 당시 고용되어 있었거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사망 직전 6개월 중에 적어도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
- 유족일시금(의무개인계좌)
 - 가입자 사망 시 납부 기간 관계없이 지급
 - 지정된 수혜자, 수혜자 부재 시 법정 대리인 수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급여

- 노령연금(사회보험)
 - 가입자 월 기초소득의 40%에 60개월 초과 납부기간 12개월당 1%씩 추가
 - 월 기초소득은 연금 수급 월의 직전 180개월간의 가입자 평균소득
 - 연기연금 : 수급연령 이후 납부하는 1년마다 월 기초소득의 3%씩 추가 지급
 - 최저연금액 : 월 기초소득의 50% 또는 1,500 lempiras 중 높은 금액

- 최대연금액 : 월 기초소득의 80%
- 상시간병수당 : 연금의 최대 50%까지 지급
- 노령일시금(사회보험) : 가입자의 납부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
- 노령연금(의무개인계좌)
 - 계좌 한도 내에서 지정된 금액 또는 일시금 지급
 - 조기인출 : 계좌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정된 금액 또는 일시금 지급

○ 장애급여

- 장애연금(사회보험)
 - 완전 장애(100%)의 경우 가입자 월 기초소득의 40%에 60개월 초과 납부기간 12개월마다 1%씩 추가
 - 월 기초소득은 연금 수급 월의 직전 180개월간의 가입자 평균소득(단, 납부기간이 180개월 미만인 경우 납부기간 전체 동안의 평균 월 소득)
 - 최저연금액 : 월 기초소득의 50% 또는 1,500 lempiras 중 높은 금액
 - 최대연금액 : 월 기초소득의 80%
 - 상시간병수당 : 연금의 최대 50%까지 지급
 - 부분장애 : 100% 미만 장애로 판정된 경우 급여액은 완전장애연금액에 장애정도(%)를 곱한 금액
- 장애일시금(사회보험) : 가입자의 납부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

○ 유족급여

- 유족연금(사회보험)
 - 배우자연금 :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40%를 수급 가능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지급, 최저연금액은 600 lempiras
 - 재혼일시금 : 12개월분 연금액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수급 가능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지급
 - 고아연금 :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20%(부모 모두 없는 경우 40%)를 지급, 최저연금액은 300 lempiras
 - 피부양 부모연금 : 수급 가능 배우자, 파트너 또는 고아가 없는 경우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20%를 수급 가능 부모 각각에게 지급, 최저연금액은 300 lempiras
 - 전체 유족연금 합산액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제비(사회보험) : 월 법정 최저소득(6,440.66 lempiras)의 두 배를 지급
- 유족일시금(의무개인계좌) : 사망자의 계좌잔고를 수급 가능 유족에게 균분 지급

- **노동사회보장사무국(Secretariat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 전반적 감독
 - <http://www.trabajo.gob.hn>

- **국가은행보험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Banking and Insurance; CNBS)**
 - 재정 감독
 - <http://www.cnbs.gob.hn>

-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Institute)**
 - 이사회 및 이사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회보험제도 관리 및 보험료 징수
 - <http://www.ihss.hn>

- **연금기금관리자(Pension Fund Administrators)**
 - 의무개인계좌 관리

<2019년 ISSA 자료>